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비 등으로 중도인출되는 비중(예: 주거 관련 비용충당 인출 63.8%)이 높아 연금재원 소진이 매우 우려됨
 - 이에 보고는 중도인출 관련 규정 및 실태를 살펴본 후, 미국 등 선진국과 중도인출 관련 규제를 비교·평가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함
-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인출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에 대한 낮은 규제수준,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
 -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임
 - 특히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 목적의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등은 엄격한 중도인출 허용 및 중도인출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짐
 -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도인출 규제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첫째, 사망,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이 바람직함
 - 둘째, 주택구입비,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담보권 설정, 상계처리 등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64%가 인출되어 연금재원의 소진이 매우 우려됨
 -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2016년 기준)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충당(18.1%)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 규제가 약해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함¹⁾
 -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현안과제로 대두됨
- 따라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중도인출 한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또한 중도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립금 유출 효과가 작은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²⁾
- 본고는 중도인출관련 규정 및 실태를 살펴본 후, 중도인출 관련 규제를 중도인출 허용범위, 중도인출 한도, 담보대출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함

1)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중도인출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적립금 상환 의무가 없는 반면, 담보대출은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도인출이 노후재원의 소진 가능성이 높음

2.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



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에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담보대출은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제도에서 허용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유(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로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등이 있음

〈표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관련 규정

구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②(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기초하여 작성

■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함

-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³⁾ 중도인출에 대한 인출한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적립금의 전액인출이 가능함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②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담보대출 사유에는 해당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자는 적립금 전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의 경우 가입자의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적립금의 40% 또는 50% 내에서 피해금액을 적용함⁴⁾

〈표 2〉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허용 사유 및 한도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DC, IRP		DB, DC, IRP	
	허용	한도	허용	한도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적립금 전액 인출 가능	○	적립금의 50% 이내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내 파산선고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	별도규정

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의 경우 가입자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적용(별도규정)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이경희(2017) 등을 참조 작성

■ 이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는 광범위하고 인출한도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편임

- 중도인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적립금 인출의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 느슨한 중도인출 규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담보대출 규정은 형식적인 규정이 되고 있음
- 퇴직연금 담보대출 규모는 2015년도 4억 3,700만 원, 2016년 4억 5,600만 원에 불과함⁵⁾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②의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5) 조선일보(2017. 4. 12), “퇴직연금 담보대출, 2년간 딸랑 9억 원...“있으나마나” 비판 고조”

나. 실태6): 성별, 연령대별, 사유별 중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 91명이며, 인출 금액은 1조 2천억 원 규모임

-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전년(2015년) 대비 42.8%, 중도인출 금액은 전년 대비 27.7%로 대폭 증가함

〈표 3〉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단위: 명, 억 원, 만 원,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인출자 수 (명)	28,080 (100)	40,091 (100)	22,326 (79.5)	31,933 (79.7)	5,754 (20.5)	8,158 (20.3)
인출 금액(억 원)	9,648 (100)	12,318 (100)	8,076 (83.7)	10,433 (84.7)	1,572 (16.3)	1,885 (15.3)
1인당 인출 금액(만 원)	3,436	3,073	3,617	3,267	2,732	2,310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대비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2),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중도인출자의 79.7%, 중도인출 금액의 84.7%를 차지하며, 1인당 인출 금액도 남성이 3,267만 원인데 반해 여성은 2,310만 원에 불과함

- 중도인출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79.7%와 20.3%로 여성보다 남성의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수준임
- 또한 남성은 중도인출 금액의 84.7%를 차지해 중도인출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령대별(2015년 기준)로 보면 30~40대가 전체 중도인출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15.0%에 불과함(표 4) 참조)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6.5%로 가장 많고, 40대 33.1%, 50대 13.6% 등의 순임
- 2015년 말 기준으로 확정기여(DC)형 가입자 연령분포가 30대 미만 12.7%, 30대 29.5%, 40대 28.1%, 50대 20.5%, 60대 이상이 9.2%임을 감안하면 30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

- 6) 중도인출 실태(현황, 중도인출 사유)는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퇴직연금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통계청은 2016년부터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일자리 DB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연금가입 및 수급 자료를 연계하여 퇴직연금 통계를 작성함

〈표 4〉 연령대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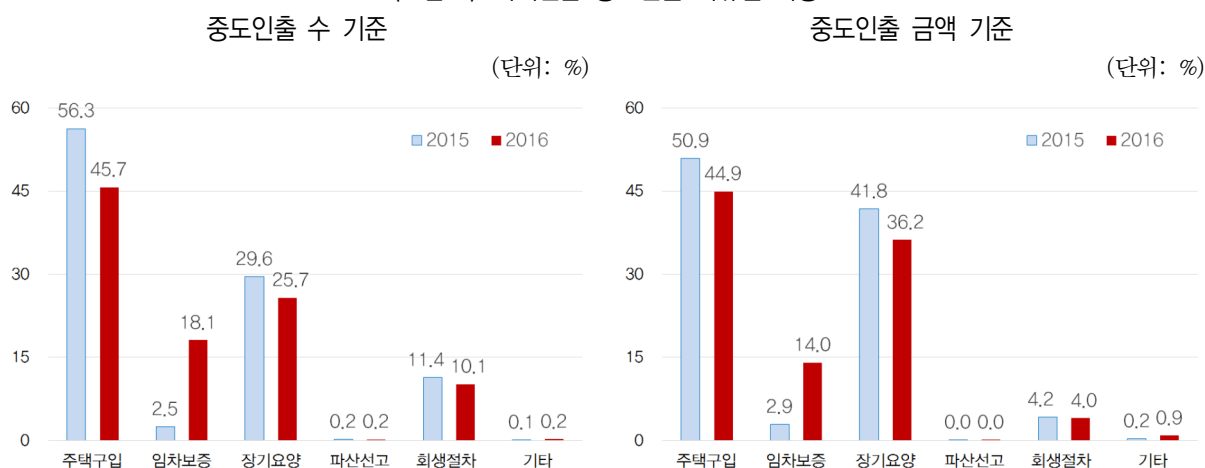
연령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비중	0.0	5.4	46.5	33.1	13.6	1.4

자료: 통계청 자료(2016)를 기초로 작성

■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63.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인출자 수 기준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절차개시(10.1%)의 순임
- 인출 금액 총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등임

〈그림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비중



자료: 통계청 자료(2017. 12) 등을 기초로 작성

- 중도인출 사유별 1인당 인출 금액은 장기요양(4천 3백만 원), 주택구입(3천만 원), 임차보증(2천 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⁷⁾
- 특히 201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허용되어, 이에 대한 중도인출이 대폭 증가함

7) 2016년 기준 중도인출 사유별 1인당 인출 금액은 다음과 같음(통계청(2017),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1) 주택구입: 3,019만 원, (2) 임차보증: 2,384만 원, (3) 장기요양: 4,322만 원, (4) 파산선고: 750만 원, (5) 회생절차: 1,307만 원

3. 중도인출 제도 평가



- 여기에서는 제2장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에 기초해 중도인출 범위 측면, 중도인출 한도 측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연계 측면에서 미국 등과 대비하여 평가함⁸⁾
- (중도인출 사유)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여 노후재원 소진이 우려되는 반면, 미국 등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은 근로활동 중단(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⁹⁾ 긴급자금수요 발생(의료비 지출) 등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최초 주택구입,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은 개인퇴직계좌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함¹⁰⁾

〈표 5〉 중도인출 허용범위(사유) 비교

구분	해외	한국
허용 범위	· 특별한 경우로 제한(위급사항) - 미국: 사망, 영구장애 등 - 영국: 건강상 퇴직, 기대여명 1년 이하	·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광범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파산선고 등 - DC형, IRP 중도인출 사유 동일
특징	· 엄격한 중도인출 규제 - 노후재원 확보 최우선	· 느슨한 중도인출 규제 - 퇴직금 중간정산제 감안

자료: IRS(2017), Publication 590-B -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GOV.UK(<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personal-and-workplace-pensions>)

-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 외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
 - 호주는 영구 및 일시적 장애, 심각한 재무적 곤경 시에만 중도인출을 인정함¹¹⁾
-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일반적이고 그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임

8) 제3장에서는 제2장 중도인출 규정 및 실태 등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기초로 평가하고자 하였음

9) 사망 시(가족들이 유산으로 인출), 영구장애(실명, 뇌손상 등 해당사항이 영구적 장애일 때), 55세 이후 퇴사 등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함

10) 주택구입 시 중도인출은 전통형 IRA, Roth IRA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1)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5), "Early Access to Your Super"

■ (중도인출 한도)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한도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립금의 전액인출로 이어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필요금액 한도 내 부분인출이 이루어짐

- 미국은 중도인출 한도가 엄격하여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 시 제도규약에 근거한 심사 후 필요한 금액한도에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짐
 -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 인출한도가 엄격하여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 및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0,000달러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부 인출되고 있는 상황임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¹²⁾ 의료비의 경우에도 요양에 대한 정의 및 세부조건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과도하게 인출될 가능성이 높음

〈표 6〉 중도인출의 금액한도 비교

구분	해외	한국
주택 구입	· 최초 구입 시 중도인출 허용(IRA에 해당) - 미국: 10,000달러 한도(120일 내 사용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 관련 규정 부재 -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의료비 지출	· 의료비 중도인출 한도 제한 - 미국: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	· 요양에 대한 정의 및 세부규정 모호 - 추상적 규정: 6개월 이상 요양 시

자료: IRS(2017), Publication 590-B -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 (담보대출 연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해 중도인출에 의한 연금재정의 소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미국 등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있음
 - 담보대출은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노후재원 소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12) 가입자가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주택구입비로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마다 한 번씩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요양의 정의 부재 및 한도 미설정으로 사소한 질환을 목적으로 전부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함

-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인출 금액에 대한 패널티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표 7〉 담보대출과의 연계성 비교

구분	해외	한국
기준	· 담보대출의 조건 및 규정 세분화 - 담보대출 규정 강화 등	· 담보대출에 대한 세부 규정 미흡 - 금리상한선, 담보권 설정 규정 등
특징	·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역할 분담 - 담보대출 먼저 활용, 부족 시 중도인출	· 중도인출 편중 적립금 인출 - 노후재원 소실 가능성 우려

자료: 미국 등 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을 참조하여 작성

-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성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개선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재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중도인출 제도 개선 검토가 요구됨
- 첫째,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미국 등과 같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적 제도 개선보다 단계적 제도 개선(퇴직연금 의무화 추세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적립금 전액인출로 노후재원이 소진될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예: 30%) 또는 일정금액(예: 3천만 원)으로 한도를 별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요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와 같은 치료기간(6개월) 기준이 아니라 총소득의 일정 비율로 요양비용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셋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
 -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담보권 설정, 담보대출 금리수준 관련 규정 마련 등으로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담보대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중도인출에 비해 적립금 유출효과가 작은 담보대출이 먼저 활용되도록 검토가 필요함 **kiri**